

# [제이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 제11기 정기사원총회(해산) 의사록

-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회의실
- 출석현황 :

정원 : 출자약정액 700억원 (100.0%)

- 무한책임사원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출자약정액 200억원 (28.57%)
- 유한책임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자약정액 500억원 (71.43%)

참석 : 출자약정액 700억원 (100.0%)

- 무한책임사원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출자약정액 200억원 (28.57%)
- 유한책임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자약정액 500억원 (71.43%)

「제이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제11기 정기사원총회(해산)가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4시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NCT타워 I 14층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회의실에서 개최되다. 의장은 무한책임사원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의 투자총괄 본부장인 이준호 부사장이 맡았으며, 제11기 정기사원총회(해산)가 정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회사 존립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보고를 하고, 영업보고 및 부의안건 상정 후 투자업체에 대해 설명하다.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제 1호 의안**                      **제11기 (해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정관 제15조③항, 정관 제45조①항 에 따라 [제2호과학기술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이 승인받고자 상정함.

| 재무상태표(요약)     | (단위:백만원)        |            |
|---------------|-----------------|------------|
| 구 분           | 제11기('17.10.18) | 제10기(FY16) |
| I. 운용자산       | 12,573          | 16,066     |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1,552           | 1,184      |
| 2. 유가증권       | 11,021          | 14,882     |
| II. 기타자산      | 733             | 1          |
| 자산 총계         | 13,306          | 16,067     |
| I. 운용부채       | 234             | 455        |
| II. 기타부채      | -               | -          |
| 1. 미지급금       | -               | -          |

|                |          |          |
|----------------|----------|----------|
| 부채 총계          | 234      | 455      |
| I. 자본금(출자금)    | 32,610   | 34,500   |
| II. 이익잉여금(결손금) | (19,538) | (18,888) |
| 자본 총계          | 13,072   | 15,612   |

- 손익계산서(요약)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11기<br>(17.01.01-17.10.18) | 제10기(FY16) |
|----------------|-----------------------------|------------|
| I. 운용수익(손실)    | 1,920                       | 14,267     |
| 1. 투자수익        | 5                           | 18         |
| 2.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 3,199                       | 14,249     |
| 3. 매매손실과 평가손실  | -1,284                      | -          |
| II. 운용비용       | 410                         | 682        |
| III. 당기순이익(손실) | 1,510                       | 13,585     |

- 자본변동표 (단위:백만원)

| 구 분               | 원본      | 결손금      | 총계       |
|-------------------|---------|----------|----------|
| 2016.01.01 (보고금액) | 42,744  | (18,410) | 24,334   |
| 출자금의 반환           | (8,244) | -        | (8,244)  |
| 이익금의 분배           | -       | (14,063) | (14,063) |
| 당기순이익(손실)         | -       | 13,585   | 13,585   |
| 2016.12.31 (전기말)  | 34,500  | (18,888) | 15,612   |
| 2017.01.01 (보고금액) | 34,500  | (18,888) | 15,612   |
| 출자금의 반환           | (1,890) | -        | (1,890)  |
| 이익금의 분배           | -       | (2,160)  | (2,160)  |
| 당기순이익(손실)         | -       | 1,510    | 1,510    |
| 2017.10.18 (당기말)  | 32,610  | (19,538) | 13,072   |

\* 금번 사원총회 후 지급할 관리보수금액은 221,552,945원이며, 정관 제27조(관리보수)에 따라 직전 정기총회 익일(2017년 3월 24일)부터 금번 해산총회일(2017년 10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을 관리보수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입니다.

※ 2017년 관리보수 미지급액 : 221,552,945원

- 감사보고서상의 미지급관리보수(221,792,945원)와 실미지급액(221,552,945원)의 차이(240,000원)는 지난 제10기 관리보수 환급분(240,000원)으로 당기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아, 청산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은 상기와 같이 제11기 (해산)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유한책임사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리인)은 해산시 관리보수 지급에 대해 정  
관 제27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금번 총회 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함.

출석 사원은 상기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

이에 의장은 출석사원 전원 찬성으로 상기 의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어서 업무집행사원은 관리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금번 관리보수의 성격은 회사가 존속하  
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금번 해산재무제표 승인 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함.

따라서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리와 운용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번 관리보  
수를 정관변경을 통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설명함.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관리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청산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사의 청산  
을 진행할 것임을 설명함.

**제 2호 의안**

**해산 및 청산 비용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회사의 정관 제25조(회사의운영비용) 제①항 2호에 의거  
회사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아래와 같으  
며, 본 비용에 대한 예산 한도를 승인하고자 함.

| 구분                            | 금액 (원)     | 비고                                      |
|-------------------------------|------------|-----------------------------------------|
| 해산회계감사보수                      | 3,850,000  | VAT 및 실비 포함                             |
| 청산회계감사보수                      | 3,300,000  | VAT 및 실비 포함                             |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br>배분명세 신고서제출     | 5,500,000  | VAT 및 실비 포함(총 3 회)<br>- 해산시점/17 년말/청산시점 |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자<br>최고 절차 | 1,902,480  | VAT 및 신문공고료 포함(기지급)                     |
| 공정가치평가, 청산등기비용 등              | 30,000,000 | 예비비                                     |
| 합계                            | 44,552,480 |                                         |

유한책임사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리인인 한국연구재단은 본 해산 및 청산비용건과 관련  
하여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정산명세서를 청산총회시 제출하여 줄 것을 업무집행사원에게 요청하  
였으며 업무집행사원은 청산총회시 별도의 해산 및 청산비용 집행명세서를 제출하기로 함.

출석 사원은 상기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

이에 의장은 출석사원 전원 찬성으로 상기 의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제 3호 의안**

**청산계획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회사의 정관 제38조(청산인) 및 제40조(청산의절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산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고자 상정함.

1. 청산기간

해산일로부터 1년 (청산예정일 : 2018년 10월 18일)

2. 청산인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3. 청산일정(안)

| 예상일정           | 절 차                        | 비 고                                     |
|----------------|----------------------------|-----------------------------------------|
| 17.10.18       | 해산일                        | 존립기간 만료                                 |
| 17.10.20       | 해산감사                       | '17.01.01~해산일                           |
| 17.10.27~28    | 채권자 최고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br>서울경제신문(1차,2차)           |
| 17.10.27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완료                                      |
| 17.11.02       | 해산보고                       | 청산인이 금융위에 해산 사항 보고                      |
| 17.11.02       | 재산상태보고                     |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작성<br>후 금융위에 제출        |
| 17.12.14       | 해산총회                       |                                         |
| 2018.01.14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br>배분명세 신고서 제출 | '18.01.15까지<br>( '17.01.01~'17.10.18까지) |
| 2018.03.14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br>배분명세 신고서 제출 | '18.03.15까지<br>( '17.10.19~'17.12.31까지) |
| ~18년 8월        | 잔여자산처분진행                   |                                         |
| 18년 9월<br>~10월 | 청산회계감사                     | '17.10.19~청산일                           |
|                | 청산총회 및 배분                  |                                         |
|                | 청산등기                       |                                         |
|                | 청산 보고                      | 금융위(금감원)와 금융투자협회 제출                     |
|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br>배분명세 신고서 제출 | '19.01.15까지<br>( '18.01.01~'18.10.18까지) |
|                | 폐업신고                       | 세무서                                     |

- 잔여자산 처분일정에 따라 상기 청산기간 및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함.

4. 잔여 투자자산 처분방안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 투자금액   | 장부가액  | 회수<br>예상액 | 회수방안                   | 비고                |
|--------------|--------|-------|-----------|------------------------|-------------------|
| (주)서남        | 6,000  | 3,000 | 2,000     | SI를 통한 M&A 또는 기술성평가IPO |                   |
| (주)비에스티      | 4,002  | 4,002 | 4,002     | 토지매각후 상환               |                   |
| 한국워터테크놀로지(주) | 1,284  | 0     | 미정        | 세컨더리펀드 매각 또는 상환        | 전액감액              |
| (주)루이디아글로벌   | 4,500  | 0     | 미정        | M&A                    | '17.02월 회생 절차조기종결 |
| 이노웨이브(주)     | 2,700  | 2,700 | 4,000     | IPO 혹은 장외매각            |                   |
| 합계           | 18,486 | 9,702 | 10,002    |                        |                   |

출석 사원은 상기 제3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

이에 의장은 출석사원 전원 찬성으로 상기 의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업체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투자업체 현황에 대해 유한책임사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리인인 한국연구재단과 업무집행사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 및 답변하였음.

1. 한국워터테크놀로지 관련

(질의) 그간 업무집행사원은 한국워터테크놀로지에 대해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다는 것을 사유로 회계감사의무 면제, 투자금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영업부진등에 따라 금번 결산시 투자금 거의 전액을 감액처리하였음. 이는 결국 업무집행사원의 투자금 사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④항에 따라 투자금의 회수 관련 업무는 업무집행사원의 고유권한에 해당함. 회계감사의무면제 및 만기연장은 당사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였음.

업무집행사원은 피투자회사의 방문, 통화, 자료요청 등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 및 자금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였으며, 가장 정확한 회사현황에 근거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였음.

한국워터테크놀로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탈수기 제작 및 판매를 진행했으며, 일부 해외 수출도 진행하면서 성장 가능성은 보여줬으나,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면서 자금 및 회계상 BEP 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시기에는 월급도 연체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이 지속됐으며,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 전환사채 만기를 단기(6개월)로 연장하며, 매 만기 도래 시마다 회사의 자금 및 영업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당사 내부 리스크위원회를 열어 동사의 상황에 대하여 위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음.

당 PEF가 전환사채 만기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동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금 회수도 전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동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극심한 자금난이 예상되므로 당 PEF 해산일 현재 회계상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나, 업무집행사원은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할 예정임.

## 2. 스탠다드펌 관련

(질의) 스탠다드펌 이해관계인인 김상백에 대한 재산조사(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실시여부

(답변) 손해배상소송판결 당시 김상백은 형사고발되어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있었고, 당사에서 김상백 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태로 실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주소지마저 타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스탠다드펌의 법정관리신청상태였으며, 이에 스탠다드펌의 이해관계인인 김상백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 당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경제적 실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김상백에 대한 징벌적 목적 때문이었으므로, 이후 보전조치나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당 PEF가 청산절차중에 있으므로, 잔여자산에 대한 평가이슈가 있어 보존조치 및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해산보고, 영업보고, 의안심의를 마치고, 2017년 12월 14일 오후 5시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원총회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다.

2017년 12월 14일

제 이 호 과 학 기 술 사 모 투 자 전 문 회 사  
업 무 집 행 사 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대 표 이 사 다 까 하 시 요 시 미



출 자 자

참석자 서명

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광석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최남철

